

## 국제교육원 운영 규정

### 제 1 장 총칙

**제1조(소속)** 국제교육원(이하 교육원이라 한다)은 루터대학교 산하 부속기관으로 설치한다.

**제2조(목적)** 본 교육원은 한국어과정을 포함한 한국학 관련 강좌 수업을 지원하고, 외국어강좌, 기타 국제교육 관련 강좌를 개설,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장 사업

**제3조(사업)** 본 교육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한국어 교육 및 외국어 교육
2. 한국어 교사 연수 및 양성
3. 언어교육 및 어학에 관한 연구
4. 국제학부 관련 업무
5. 기타 외국학생의 국내유치와 관련된 사무

### 제 3 장 조직 및 역할

#### 제4조(조직)

- ① 본 교육원에는 원장, 한국어교육부장, 외국어교육부장, 행정지원팀장을 둔다.
- ② 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한국어 교육과 외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 한국어 교육부와 외국어 교육부를 둘 수 있으며 한국어교육부장과 외국어교육부장은 원장이 임명한다.

#### 제5조(역할)

- ① 원장은 본 교육원을 대표하고 교육원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각 교육부장은 교육 프로그램개발,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과 강사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- ③ 행정지원팀장은 본 교육원의 행정에 관한 총괄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.

## 제 4 장 재정 및 운영

**제6조(재정)** 본 교육원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, 독립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.

**제7조(운영세칙)** 본 교육원의 강사료 및 인건비에 관하여는 원장이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